

# 강의전담교수임용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개정 2014. 3. 1. 개정 2016. 1. 6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중앙학원 정관 제39조 및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의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강의전담교수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, 처우,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해진 계약기간에 한하여 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강의전담교수의 자격은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(다만,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 및 예·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)
2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*제4조(직급)** 강의전담교수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.

**제5조(의무)** ① 강의전담교수는 계약에 의한 주당책임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연구 및 학사업무 협조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강의전담교수는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다만 외래강사의 신분으로 다른 기관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학부장(학과장)의 출강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신규임용의 경우 2년, 재임용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② 삭제 <2014.3.1.>

**제7조(임용절차)** ① 강의전담교수의 신규임용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외국어회화 등 실기,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 및 예·체능계의 경우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② 임용 및 전형은 우리대학 전임교원 신규임용 절차에 준한다.

**제8조(임용계약)** ① 임용 계약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개인별로 체결한다.

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급여 내역
3. 강의 교과목 및 책임시간과 강의담당 교과목명

4. 기타 필요한 계약사항

③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및 우리대학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8조의2(재계약)** ① 교학처장은 강의전담교수에 대하여 계약기간내의 강의부문인 교육업적평가표를 제출받아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②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되는 강의전담교원에 대하여 제출된 교육업적평가표를 재계약심사소위원회 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.)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하고 임용기간 만료 60일 전에 개인별로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의3(평가기준)** 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당해 연도 임용자는 임용일자에 상관없이 평가에 소급 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.6.>

**제9조(신분보장)** ①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중 우리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책임과 신분을 보유한다.

② 강의전담교수는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교과목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0조(휴직)** 강의전담교수는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**제11조(처우)** 강의전담교수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준용)**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, 법인 정관 및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